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15년 2월 26일(목)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권혜진 과장(044-203-5810), 허희정 사무관(044-203-5814)

한국-터키 경제협력 관계의 새로운 도약

- 양국 통상 장관,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정식서명 실시 -

□ **2. 26. (목)**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은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협정문을 정식 서명**했다.

○ 이 협정을 발효하면,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은(이하 GDP) **는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0.6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건설 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경제적 영향 평가 결과('14.11월, 산업연구원)

□ 한국-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은 '13. 5. 1. 우선 발효됐다.

○ 양국은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14.7월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실질타결**하고, **'14. 9. 18.**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 양국은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을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하기로 약속

【 한국-터키 FTA,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 】

□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을 정식서명함으로써,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으로만 국한되었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했다.

○ 터키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포함**시켜, 터키에 진출한 우리 서비스 공급자 및 투자자가 FTA로 인한 특혜를 최초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 우리 기업이 뽑은 유망 신흥시장, 터키로의 진출 확대 기대 】

□ **(시장잠재력)** 터키는 유럽에서 **인구 2위**를 차지하고, '11년까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터키는 '15년 우리 기업(무역협회 회원사)이 뽑은 유망 신흥시장 상위 15개 국가 중 5위를 차지

○ '13.5월 상품협정 발효 후 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로,*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FTA 발효 전 3년간 양국 교역 증가율은 연간 19% 수준이나, 상품협정 발효 후 1년간('12.5월~'13.4월) 33%로 약 2배 가까이 교역 규모 증대

○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 **발효 후 10년간 GDP는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0.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건설 서비스**(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여가문화 서비스**(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 **등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수준 이상의 시장 개방을 약속한 분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 '05년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시 제시된 양허안으로, 현재 유효한 WTO 서비스협정(GATS)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약속

□ **(지정학적 중요성)** 아울러, 터키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아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활용할 수 있다.

[향후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한국-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우리 기업이 조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참고 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추진 경과
참고 2: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주요 내용
참고 3: 한-터키 교역·투자 현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권혜진 과장(☎ 044-203-58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추진경과

□ '10.3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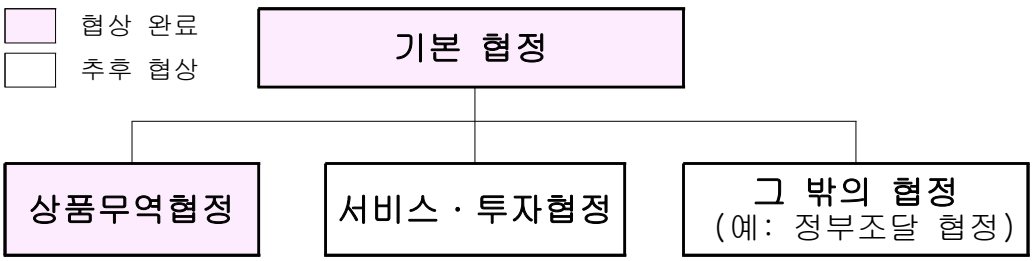
□ '10.4월 ~ '12.3월간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 공식협상: 1차 '10.4월(앙카라), 2차 '10.7월(서울), 3차 '11.3월(앙카라), 4차 '12.3월(서울)
* 소규모 협상: 1차 '11.11월(서울), 2차 '12.1월(앙카라), 3차 '12.2월(이스탄불)

□ '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타결

□ '13.5.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우선 **발효**

【 한-터키 FTA 협정 구조 】



□ '13.8.21~22(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4차 협상**

* 서비스·투자협정은 '11.3월 제3차 협상까지 진행 후 중단되어,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기본협정 제1.5조)

□ '13.11.18~21(서울)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5차 협상**

□ '14.2.20~21(브뤼셀) 한-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

□ '14.4.2~4(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6차 협상**

□ '14.6.9~10(이스탄불) 한-터키 FTA 투자협정 회기간 협상

□ '14.6.30~7.4(서울)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

□ '14.9.18(앙카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영문본 가서명**

참고 2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주요 내용

☞ **터키 최초로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관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현지 진출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

* 터키의 기체결 FTA는 모두 상품 분야로만 국한

1 서비스 협정

◈ **(서비스협정)** WTO 서비스협정(GATS)을 토대로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

◈ **(시장개방)** WTO DDA 양허안*을 넘는 수준의 양허에 합의

– **특히 터키측은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문화, 환경 분야 등 18개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약속**

* '05년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시 제시된 양허안으로, 현재 유효한 GATS 양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

□ 협정문의 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양국간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되,

○ 다만, 연안 해상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 정부조달, 정부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는 제외함

* 항공 운송 서비스 중 항공기 유지 및 보수, 항공 운송 관련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는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

□ 자유화 방식

○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와 같이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

- 다만, 향후 터키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서비스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측 요청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할 것을 명시하여 **추가 자유화 근거를 확보**

□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시장접근 제한 금지)** 공급자 및 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설립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 **(합리적인 국내규제)**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할 의무

□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 **양국 모두 자국의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터키측은 ▲ **건설** 관련 분야(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기타 운수장비 등), ▲ **문화** 분야(영화·비디오 제작 배급, 엔터테인먼트 등), ▲ **환경** 분야(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등을 포함한 총 18개 분야*에서 **DDA 플러스(+)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

*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 우리는 한-EU FTA와 유사하게 대졸연수생(Graduate Trainee)*의 일시 체류(1년) 및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기로 약속

* 최소 1년간 자국 법인에 고용되어 있고, 학사학위를 보유한 자로 경력 개발이나 연수 목적으로 상대국 내 자회사 등에 파견 근무된 자

2 투자 협정

◈ **(투자협정)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 규범 및 체계적인 ISD도 포함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장개방)** 非**서비스업(제조업, 1차 산업, 에너지업)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의 유보를 작성**

– **우리는 농축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 분야를, 터키는 농·어업, 광업, 부동산 등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권한을 확보**

□ 협정문의 적용 범위

○ **非서비스 투자**(1차 산업 및 제조업)에 한해 투자협정에서 규율하되, 서비스 분야 투자도 투자보호 조항을 적용받도록 규정

* 서비스 분야 투자는 서비스협정에서 규율하는 점에서 한-미 FTA와 차이
– 한-미 FTA는 서비스 투자 및 非서비스 투자 모두 투자 챕터에서 규율

□ 자유화 방식

○ 모든 분야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되, 개방하지 않을 분야의 유보 목록을 작성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

* 터키로서는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유보 목록 작성에 합의

□ 일반적 의무

○ **(투자의 대우)** 설립 전(pre-establishment)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투자 자유화 의무 규정

○ **(혜택의 부인)** 제3국인이 소유하고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상대국 기업(일명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동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

○ **(이행요건 부과금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관련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 냉각기간, 제척기간, 준거법, 중재인 임명 등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 절차를 상세히 규정**

□ 기타 제도적 장치

○ **(간접수용 부속서)** 간접수용의 정의, 간접수용의 판정기준, 간접수용의 예외(환경, 보건, 부동산정책 등)을 명확하게 규정

○ **(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 한-미 FTA 수준의 송금 조항 부속서를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추구

□ 시장 개방 수준

○ 우리는 농축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 분야를, 터키는 농·어업, 광업, 부동산 등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권한을 확보**

참고 3 한-터키 교역 · 투자 현황

□ 교 역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1
수 출	4,087 (35.6)	3,773 (△7.7)	2,661 (△29.5)	3,753 (41.1)	5,071 (35.1)	4,552 (△10.2)	5,658 (24.3)	4,966 (△12.2)
수 입	282 (44.9)	362 (28.5)	434 (20.0)	516 (18.8)	805 (55.8)	672 (△16.4)	692 (2.9)	604 (△12.7)
무역수지	3,805	3,411	2,227	3,237	4,266	3,880	4,966	5,462
총교역액	**4,369**	**4,135**	**3,095**	**4,269**	**5,876**	**5,224**	**6,350**	**6,671**

※ '14.11월 기준 터키는 우리의 제30위 교역파트너 (수출 21위, 수입 52위)

□ 투 자

《단위 : 천불,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 계
터키의 대한국 투자	1,308 (7)	205 (4)	1,977 (10)	916 (7)	2,131 (9)	2,240 (8)	553 (2)	15,388 (84)
한국의 대터키 투자	89,797 (30)	247,104 (45)	66,636 (30)	135,842 (39)	292,295 (44)	179,084 (57)	91,325 (36)	1,480,027 (392)

※ 터키의 대한국 투자는 '14년까지, 한국의 대터키 투자는 '14.9월 기준
※ 누적 신고금액 기준 터키는 대한국 제68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40위 투자대상

□ 한국의 對터키 10대 교역품목 현황(2014.11월)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합성수지	917	18.5	의약품	88	14.6
평판디스플레이	610	12.3	자동차부품	57	9.4
자동차부품	397	8.0	기타석유제품	49	8.1
열연강판	270	5.4	직물제의류	27	4.5
승용차	200	4.0	편직제의류	25	4.1
석유화학합성원료	191	3.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9	3.1
건설중장비	190	3.8	아연광	19	3.1
기타플라스틱제품	167	3.4	기타정밀화학원료	18	3.0
무선전화기	154	3.1	기타비금속광물	15	2.5
원동기	149	3.0	기타금속광물	15	2.5
소 계	**3,245**	**65.3**	**소 계**	**332**	**54.9**
전 체	**4,966**	**100**	**전 체**	**604**	**100**